

#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는 근로자 건강진단

## 1. 실시근거 및 목적

가.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보호, 유지에 적합하도록 유지,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~107조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(노동부고시 제2008-101호,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(보건분야 기술자료 연구원 2009-1-1) 근로자 건강진단관리규정(노동부예규 제520호)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

실시목적	종류
1. 근로자의 주기적인 건강보호 및 유지	일반건강진단
2. 유해인자(177종) 노출업무 신규배치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 추가확보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평가	배치전건강진단
3. 유해인자(177종)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	특수건강진단
4. 유해인자(177종)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, 피부질환기타 건강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재평가	수시건강진단
5. 직업병 집단 발생 예방 및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, 유지	임시건강진단

나.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함

다.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만, 사업주가 지정하는 건강진단 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음.

## 2.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개요

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, 배치전건강진단,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(규칙 제98조의 2제 1항)

또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함 (규칙 제98조의 2제2항)

## 3. 일반건강진단

### 가. 정의

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(규칙 제98조 제1호)

### 나. 대상 및 실시시기

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사무직은 2년 1회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

※ 사무직 근로자 :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사무, 인사, 경리, 판매, 설계 등 사무업무(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)에 종사하는 근로자 (규칙 제99조 제 1항)

※ 실시시기의 명시 :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분명히 밝히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(규칙 제 99조의 4)

### 다. 실시기관, 검사항목, 실시방법 및 준수사항

실시기관	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기관
검사항목	과거병력, 작업경력 및 자각, 타각증상, 혈압, 혈당, 요당, 요단백 및 빈혈검사, 체중, 시력, 청력, 흉부방사선 간접촬영, 혈청GOT 및 GPT 검사, GPT 및 총 콜레스테롤
실시방법	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 2차 진단의 범위 검사항목, 방법 및 시기 등을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함

### 라. 실시면제

- (1) 타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실시인정(규칙 제99조 제1항 단서)  
-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
-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
  - ②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
  - ③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
  - ④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
  - ⑤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사
  - ⑥ 그 밖에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

### 4. 특수건강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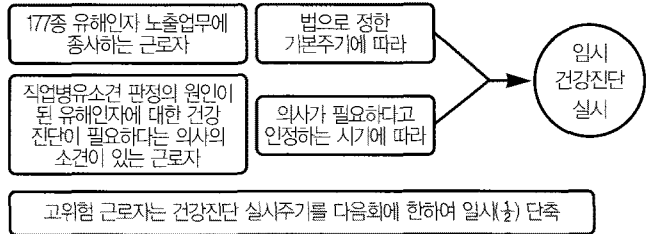
#### 가. 정의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(규칙 제98조제 2호)

- (1) 규칙 별표 12의 2에서 정한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- (2)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

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

### 나. 대상 및 실시시기



- (1)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(규칙 별표12의2)노출업무 종사 근로자 ⇒ 규칙 별표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실시 (규칙 제99조 제2항)  
※(규칙 제99조 제2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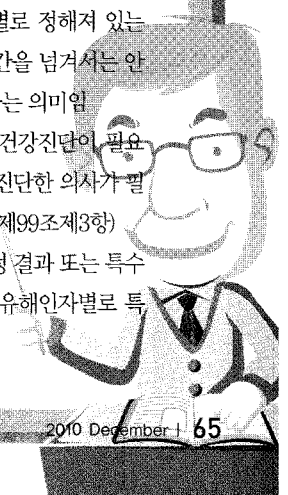
구분	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(시행규칙 별표 12의 2)	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	건강진단 시기 부터의 실시주기
1군	N, 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N, N-디메틸포름아미드 (DMF)	1개월 이내	6개월 마다
2군	벤젠	2개월 이내	6개월 마다
3군	1, 1, 2, 2, -테트라클로로에탄, 시멘트산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, 염화비닐	3개월 이내	6개월 마다
4군	석면, 먼분진	12개월 이내	12개월 마다
5군	광물성분진, 목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	12개월 이내	24개월 마다
6군	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	6개월 이내	12개월 마다

※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

-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 진단 시기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'0개월 이내' 라는 기간의 의미는 0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임

(2)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⇒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(규칙 제99조제3항)

(3) 고위험 근로자 ⇒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또는 특수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



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

**다. 실시기관, 검사항목, 실시방법 및 준수사항**

실시기관	특수건강진단기관	
검사항목	1차 검사항목	2차검사항목
실시방법	1차 검사항목은 대상자 전체에 대해 실시 2차 검사항목은 1차 검사항목 검사결과 건강수준 평가가 곤란한 자 또는 질병 의심자에게 실시	

**라. 실시 면제**

(1) 타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실시인정(규칙 제99조 제1항 단서)

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

- ①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 (방사선만 해당)
-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
-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(방사선만 해당)
- ④ 그 밖에 별표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(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)

(2) 같은 검사항목의 생략

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(규칙 제99조제6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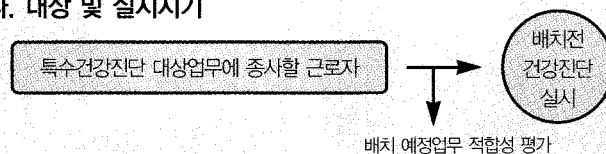
(3) 수시건강진단 실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3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
다만 직업성 천식· 직업성 피부염 의심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은 그러하지 아니함(실시기준 제9조의2 제3항)

**5. 배치전 건강진단**

**가. 정의**

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(규칙 제98조 제3호)

**나. 대상 및 실시시기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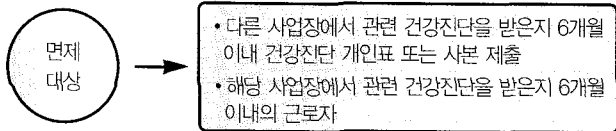
※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,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

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함(규칙 제99조 제4항)

#### 다. 실시기관 검사항목

- (1) 실시기관 : 특수건강진단기관(규칙 제98조의3 제1항)
- (2) 검사항목 :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은 규칙 별표13과 같음(규칙 제100조 제4항)

#### 라. 실시면제



※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(규칙 제99조 제4항 단서)

- ①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,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,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및 제2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기재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
- ②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,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았거나,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및 제2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

※ 같은 검사항목의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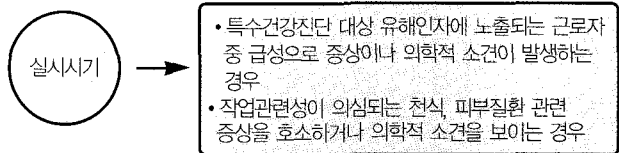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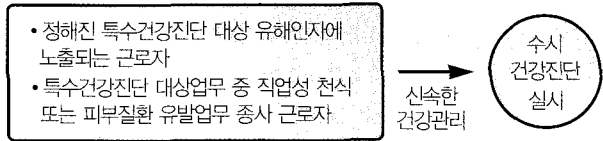
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(규칙 제99조 제6항)

### 6. 수시건강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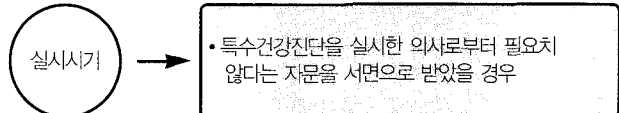
#### 가. 정의

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, 직업성 피부염, 그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(규칙 제98조 제4호)

#### 나. 대상 및 실시시기



#### 다. 실시면제



※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 또는 요청 받았으나,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 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(실시기준 제9조의2제1항 단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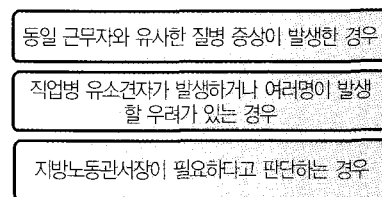
#### 수시건강진단 실시후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면제

수시건강진단 실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3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. 다만, 직업성 천식, 직업성 피부염 의심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은 그러하지 아니함(실시기준 제9조의2 제3항)

### 7. 임시건강진단

#### 가. 정의

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,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(규칙 제98조 제5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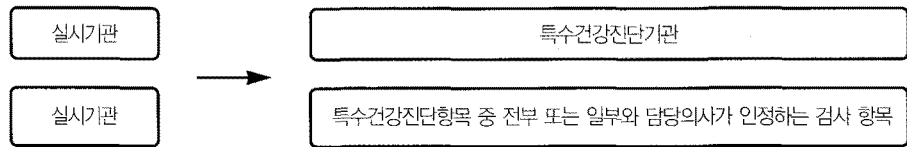
### 나. 대상 및 실시시기

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(법 제43조 제2항)
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(규칙 제98조 제5호)

- 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,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
-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그 밖의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### 다. 실시기관 및 검사항목



※ 실시기관 :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산업의학전문의를 보유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

※ 검사항목 : 규칙 별표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 (규칙 제100조제7항)

### 8. 산업의학적 평가

일반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, 배치전 건강진단,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는 실시기준 별표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,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함(실시기관 제18조)

산업의학적 평가란 건강관리 구분, 업무수행적합여부평가, 사후관리 등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업무수행적합여부평가를 통하여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(실무지침)

